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행정/노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업송무	②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식품 판매로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경우, 판매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행정/노무	③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1주간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함.
공포 법령	건설/부동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
입법/행정예고	건설/부동산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50채 이상 단지로 확대.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서울경제 22.12.02. “공공기관 허위공시 시 과태료”…김영주, 공공기관운영법 발의 https://www.seaaily.com/NewsView/26EQW1TQQ9	22.12.01. 제안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Z2L1O1D2G2H1I3W4P4H5R2N7S7K8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백종현 (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같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등)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Z2L101D2G2H1I3W4P4H5R2N7S7K8</p>	아시아경제 22.12.08.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으로 못 때문이다...국회, 남양 사태 후속 법안 발의	22.12.05. 제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0809033162845>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권명호 (국민의힘)</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p> <p>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p>	<p>이데일리 22.12.07.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지노선 '짜깁깁'...애타는 중기</p> <p>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15606632556224&mediaCodeNo=257&OutLnkChk=Y</p>	<p>22.10.27. 제안</p> <p>22.10.28. 소관위 회부</p>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C2E1X0D2C5D1V7P2I9G0R2Y2I5Z8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941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제안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산정기준 개선(제9조제1항제2호나목) 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 종전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업자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제21조제3호 후단 신설)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 종전에는 정비구역의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았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p>이데일리 22.12.13.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 '연면적' 도입... "중·대형 공급 가능해진다"</p> <p>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32558192&mediaCodeNo=257&OutLnkChk=Y</p>	<p>22.12.09. 일부개정</p> <p>22.12.11. 시행</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다. 건설업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행위 제한(제96조의2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무이자 또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금전의 대여 등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함.</p> <p>라. 건설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 행위(제96조의3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금지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행위를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p>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의2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조제3항제2호 개정) 	<p>동아일보 22.12.09. 아파트 관리비 공개 100채 → 50채 이상으로 확대</p> <p>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08/116918768/1</p>	22.12.09. ~ 23.01.19.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바. 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p> <p>사.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p> <p>아.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제2항 신설)</p>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1183?pageIndex=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도 산안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야" (2022.12.13.)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2148300003?input=1195m>

주요내용 서울고등검찰청 송지용 부장검사는 13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송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안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각각 정의한 후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안법의 특별법으로 역할하는 중대재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임.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고,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송 부장검사는 산안법의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문제도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조선비즈][기사] 경제단체장 만난尹대통령 "중대재해법 결함 많다"(2022.12.12.)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12/12/KIW2FY4MBVE65DDNX5YUN7C2Q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며 보완 의사를 나타냄.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현재 국회 상황이나 여야 지형 자체가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녹록지 않다며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음.

[법률신문][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대상은 CSO가 아닌 대표이사 (2022.12.1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710>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이달 8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은 211건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31건임. 이 사건들 전부에서 CSO 등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제9호와 제 6조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정의한 법 조항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그간 법조계에선 기업이 CSO를 선임할 경우 대표이사가 면책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음. 법조계에서는 이론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 CSO가 포함될 수 있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국회에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 등으로 좁히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음.

[한국경제][기사] 대륙아주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2022.12.0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0435651>

주요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선보였음.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고 구축을 돕는 민간 인증제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인증제 도입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됨. 문서 및 현장 심사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유해위험 요인 관리, 하청업체 관리 등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가 그룹이 감사와 평가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함. 이후에도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함. 대륙아주는 인증제를 도입할 유인이 큰 분야로 하청·재하청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건설업계를 꼽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행정/노무팀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